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10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의자 : 추경호 · 김상훈 · 이달희

권성동 · 김정재 · 서지영

김위상 · 권영진 · 박대출

안철수 · 김은혜 · 김미애

최은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 제3호 · 제5호 ·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p> <p>4. (생략)</p> <p>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u>2025년 12월 31일</u>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p> <p>6. · 7. (생략)</p> <p>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u>2025년 12월 31일</u>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p> <p>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u>2028년 12월 31일</u></p> <p>-----</p> <p>-----</p> <p>-----</p> <p>-----</p> <p>6. · 7. (현행과 같음)</p> <p>8. -----</p> <p>-----</p> <p>-----</p> <p><u>2028년 12월 31일</u></p> <p>-----</p> <p>-----</p> <p>-----</p> <p>-----</p> <p>9. -----</p> <p>-----</p> <p>-----</p>
---	--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 -----.
② ~ ⑫ (생략)	② ~ ⑫ (현행과 같음)